

의안번호	제2637호
의 결	2023.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정영환 의원 등 4인
발의연월일	2023. 6. 28.

#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정영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7
----------	------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의자 : 정영환,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의원(4인)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채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채무보증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다. 보증채무의 변경, 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23호
  - 예고기간: 2023. 6. 28.(수) ~ 2023. 7. 3.(월) [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

고성군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고성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고성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고성군수는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

제 호

귀하

고성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고성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고성군수는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제 호

고성군수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그 밖의 참고 사항:
10. 준수 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고성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고성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다. 채권자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보증채무 현황표

(            년도            분기)

주채무자	용 도	보 증 채무액	대출누계	직전 분기말 채무액	이번 분기중		이번 분기말 채무액	이번 분기말 연체액	이번 분기중 이자 발생액	이번 분기중 이자 상환액	이번 분기말 미수이자
					대출	회수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